부속서 8-다 전문직 서비스

- 1. 각 당사자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전문직 자격, 면허 또는 등록의 인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대화를 수립하는 데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를 확인하고자 자신의 영역의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.
- 2. 각 당사자는 전문직 자격을 인정하고, 면허 또는 등록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, 자신의 관련 기관이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관련 기관과 대화를 수립하도록 장려한다.
- 3.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기관이 상호 관심 있는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자격, 면허 또는 등록의 상호 인정을 위하여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관련 기관과 모든 형태 의 약정을 교섭하도록 장려한다.
- 4.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기관이 전문직 자격, 면허 및 등록의 인정에 대한 협정을 개발함에 있어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 있는 협정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.
- 5.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, 추가 필기 시험 없이,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본국 면허 또는 공인된 전문직 기구 회원 자격에 근거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.
 - 가. 임시 또는 프로젝트별 면허나 등록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다. 또는
 - 나. 적절한 경우, 그러한 면허 또는 등록을 허용한다.

임시 또는 제한된 면허 제도는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적용 가능한 현지 면허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현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.

6.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언급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,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련 기관이 상호 수용된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전문직 표준 및 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며,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교육
- 나. 시험
- 다. 경험
- 라. 행동 및 윤리
- 마. 전문성 개발 및 재증명
- 바. 종사 범위
- 사. 현지 지식, 그리고
- 아. 소비자 보호
- 7.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, 피요청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경우 전문직 서비스 공급 자의 면허 및 증명을 위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적절한 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.
- 8. 각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, 관련 직종을 위한 공동의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할 때 국제적인 틀을 참고하도록 자신의 관련 기관을 장려한다.
- 9. 당사자들은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를 통하여 이 부속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.